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소음 저감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시민, 사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의 소음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소음측정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를 위한 협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2
----------	-----

발의연월일 : 2023. 1. 6.

발 의 자 : 이원주·강창석·권성현·김경희·김모정·김상현
김현일·김혜란·문순규·박강우·박해정·백승규
서명일·서영권·손태화·삼영석·오은옥·이우완
이정희·이종화·이찬수·이해련·전홍표·정순욱
진형익·최은하·한상석·한은정·황점복 의원(29명)

1. 제안이유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소음 저감 자율참여 유도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 시민, 사업자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라. 생활소음 관리를 위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의 소음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소음측정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를 위한 협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창원시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원시에 위치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은 소음방지 및 저감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의 수립·추진)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음 저감 및 관리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의 소음(이하 “생활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이하 “이동소음”이라 한다)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음 저감을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생활소음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생활소음의 관리를 위해 사업장 및 시설 등에 출입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거나 사업자등에게 소음측정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을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가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이하 “특정공사시행자”라 한다)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소음관리 조치명령) 시장은 생활소음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3. 방음시설의 설치
4.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8조(지도점검) 시장은 주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시행자의 저감대책 이행 상태
2.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의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제7조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 상태
4. 그 밖에 고요하고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소음 발생 행위

제9조(소음저감 협약 및 지원)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등이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약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에 노력한 사업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사업자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 및 저감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

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 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법 제14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가동개시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 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騒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